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임업인 의무준수사항

- 의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이행기간 :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 준수사항별 미이행 시 각 10% 감액

구 분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의 생육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 - 산불·산사태·병해충 방지 등 예방활동과 산지정화활동 수행 - 이웃한 산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 표시·관리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 농약, 분뇨, 퇴비, 액비 적정 사용, 비료 보관, 하천수·지하수 이용준수 •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 병해충 등의 발생을 신고할 것 • 산지 및 주변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 • 농업경영체 경영정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할 것 • 영림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 국토환경·자연경관 보전,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것 <p>*임업 관련·협회 단체 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p>	
개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수준 사용 • 임산물 생산·유통·판매 시 유해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 준수 • 임산물 출하 제한, 폐기, 용도 전환·출하 연기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예방을 위해 임도, 진입로, 작업로를 관리할 것 - 산림경영계획 인가대로 사업 시행 • 임목본수 일정 수준 이상 유지

임업인 교육 수강 방법

온라인 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 접속 ➡ 「임업직불제 간편로그인」
배너 클릭 ➡ 경영체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 ➡ 수강
- 임업-in(www.foco.go.kr) 접속하여 수강(4월 오픈 예정)

집합 교육

-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등의 운영계획에 따라 수강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직불금을 등록 신청한 시·군·구 또는 지방산림청으로 문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 및 지급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임업직불금 지급

• 산지 소재지 시·군·구 산림부서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아래의 접수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접수기관 주소 및 연락처

주민등록 소재지	접수기관	주 소	연락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중 춘천시· 원주시·홍천군· 횡성군·철원군· 화천군· 양구군·인제군	북부 지방 산림청	(우)2646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배율로 124	전화) 033-738-6173~7 팩스) 033-738-6179
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동해시· 태백시·속초시· 삼척시·영월군· 평창군·정선군· 고성군·양양군	동부 지방 산림청	(우)25473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57-14	전화) 033-640-8653~8 팩스) 033-640-865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중 창원시·김해시· 밀양시·양산시· 함안군·청양군	남부 지방 산림청	(우)36663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솔밭길 28	전화) 054-850-4102~9 팩스) 054-842-7106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중부 지방 산림청	(우)32599 충청남도 공주시 봉정돌고개길 20	전화) 041-850-5313~22 팩스) 041-850-5304~5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중 진주시· 통영시·사천시· 거제시·의령군· 고성군·남해군· 하동군·산청군· 함양군·거창군· 합천군·제주특별자치도	서부 지방 산림청	(우)55710 전라북도 남원시 산동면 요천로 2311	전화) 063-620-4655~6 063-620-4645~8 팩스) 063-620-4649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알아보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란?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 종류

-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 육림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구 분	구간 및 단가	
소규모임가직불금	0.1ha이상~0.5ha이하 : 임가 당 130만원*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	면적직불금 (일반품목)	1구간(0.1ha이상~2ha이하) : 94만원/ha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3구간(6ha초과~30ha이하) : 70만원/ha
면적직불금 (송이)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육림업 직불금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3구간(20ha초과~30ha이하) : 32만원/ha	

* 소규모임가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을 위한 「임업직불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임

☞ 지급단가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고시될 수 있음



사업추진 절차 안내

접수 및 지급

산지 소재지 자체체 (읍·면·동 접수/시·군·구 지급)

지급요건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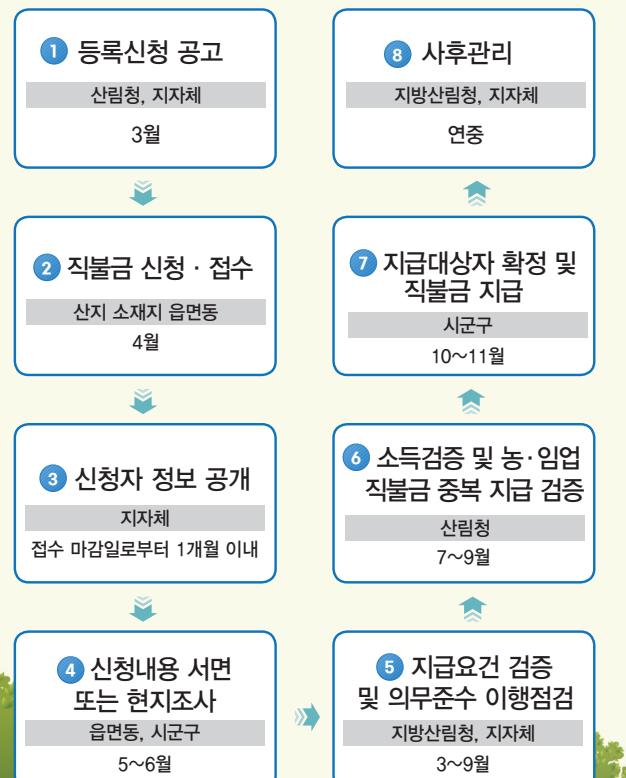
자체체 읍·면·동 및 산림부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및 자체체 산림부서

추진 절차

* 추진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업직불금 올바르게 신청하기

신청 전 주의사항

◆ 임업경영정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변경하기

- 임업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 산지 소유주 또는 임차 정보(임대차 계약자 또는 기간 등)가 변경된 경우
- 재배품목, 재배면적(휴경면적)이 변경된 경우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와 임업인이 변경된 경우
- 이외에도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 직불금 신청 시 임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다를 경우 직불금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산지 및 대상자 요건

공통요건(임산물생산업·육림업)

- ◆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
-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 등(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업기준을 충족해야 함)
-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임가·면적) 지급요건

- ①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
- ② 연간 임산물 판매액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 증빙

소규모임가직불금 자격요건

(모두 충족시 임가 중 지급대상자 1인에게 지급)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산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산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영농 종사 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2,0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4,500만원 미만
- 임가 내 모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연도 기준으로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0.1ha~30ha(농업법인 5~50ha)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종사

육림업 직불금 지급요건

- ① 대상 산지 소유자(또는 입목등기)
- ②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
- ③ 직전년도 10년 내 본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의 조림, 숲가꾸기 등의 육림실적이 있는 3~30ha(농업법인 10~50ha) 산지

주업기준

- ◆ 산지 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의 농촌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주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임산물생산업

- ※ ① ~ ③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 ① 주소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에서 3㏊(농업법인 10㏊) 이상 임산물생산업 종사
 - ② 임산물 판매액 연간 1,600만원(농업법인 8,000만원) 이상
 - ③ 임산물 생산을 위한 경영투입비 연간 800만원(농업법인 4,000만원) 이상

육림업

- ※ ①, ②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주업기준 충족함
- ① 주소지(주된 사무소)와 동일한 시·도에서 30㏊(농업법인 300㏊) 이상 경영(연접한 시·군의 산지 포함)
 - ② 주된 산지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서 100㏊ 이상 경영 및 해당산지 연 90일 이상 종사하고, 목재판매액 연 1,600만원 이상 이거나 경영투입비 연 800만원 이상(농업법인은 해당사항 없음)

